



# 서울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

수신자 전 회원사  
(참 조)

## 제 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

1. 전세연 제2020-161호(2020.07.21.)와 관련입니다.

2. “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다 일으킨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회사 등의 구상 가능 최고액을 아래와 같이 상향하는 내용“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령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, 각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= 아 래 =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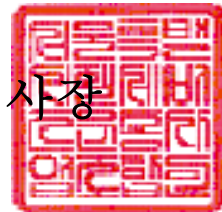
변 경 전		변 경 후	
[사고피해]	[구상가능 최고액]	[사고피해]	[구상가능 최고액]
사망·부상	1건당 300만원	사망·부상	1건당 1,000만원
재물 멸실·훼손	1건당 100만원	재물 멸실·훼손	1건당 500만원

※시행일 : 2020년 10월 22일

붙임 : 여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사본 1부.

※붙임자료는 조합홈페이지([www.tourbus.or.kr](http://www.tourbus.or.kr))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. [끝]

서울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



담 당 박영수 부 장 라영석 실 장 박호동 전무이사 박태환

협조자

시행 서전버조 20- 204호 ( 2020.07.24 ) 접수 ( )  
우 055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19 (교통회관 11층) / <http://www.tourbus.or.kr>  
전화 02-422-0019 전송 02-418-0071 / / 공개

"안전띠는 생명띠 정지선은 생명선"